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83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2
※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별 소상공인 · 자영업자 범죄피해 예방 물품 지원사업 현황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26.
3. 회부연월일 : 2025. 8.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는 84.3%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및 범죄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안 제11조의2제1항). 그리고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11조의2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 여부에 따라 범죄 피해 회복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1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대표자가 여성인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여성인 소상공인을 말한다)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소상공인이 고용한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사업에 직접 관련된 활동

	<u>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의 회복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금 지급, 의료 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심리 상담, 법률구조 등 지원</u> <u>② 중소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 <u>③ 중소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금 조정 등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25년 8월 기준 567만 5천명으로, 이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24만 1천명(74.7%)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자영업자(173만 1천명, 전체의 30.5%)의 약 75.9%(131만 4천명)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남.¹⁾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의 노동환경과 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²⁾에 따르면, 경기도 자영업자 2,423명(남성 1,572명, 여성 851명) 중 업무수행 중에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1.09%)이 남성(0.65%)에 비해 높았고, 특히 20~30대 여성 자영업자의 피해 경험은 3.3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1)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2) 정형옥,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과 폭력피해경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슈분석」 제223호, 2022.4.

‘성희롱’을 당한 비율은 여성의 경우 1.08%로 나타났으며(남성의 경우 없음), 여성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피해율(1.37%)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또한, 2024년에 실시된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의 노동환경에 관한 실태조사³⁾에 따르면, 조사대상(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1,169명)의 4.0%는 자영업을 하면서 여성폭력 범죄 피해를 직접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4.6%는 주변의 여성 자영업자들이 여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응답자의 17.4%는 여성 자영업자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19.0%는 여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관련 연구 및 조사에 따르면, 특정한 장소에서 문을 열어두고 영업해야 하는 자영업의 특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인원 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이는 자영업자의 안전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 인바, 여성 1인 자영업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라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그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3) 정형욱,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4.11.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범죄 피해 예방 물품(비상벨 등)을 지원하고 있음(참고자료 1).⁴⁾

아울러,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및 의료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범죄 피해 회복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11조의2제3항에서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 피해 회복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금 조정 등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⁵⁾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4) <관련 기사>

- 연합뉴스, ““누르면 달려온다”...김제시, 1인 점포에 안심벨 설치”, 2025.1.23.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3139100055>)

-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장에 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 지원 추진“, 2025.2.3.

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범죄 피해 회복 지원을 개별법에 규정하는 방안의 실효성 및 법체계의 정합성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사업의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른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 또는 범죄 피해 회복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제21조⁶⁾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⁷⁾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이하 생략)

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회복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사용하는 방안 및 이에 따른 중복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에 따라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사업의 근거가 마련될 경우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또는 범죄 피해 회복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상담, 의료 제공,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4.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5. 「법률구조법」 제2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관련된 조치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정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법무부는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경제(범죄피해 구조금), 심리(스마일센터), 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의료(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치료비 지원) 분야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현행 제도와 상당부분 중복¹⁰⁾되므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870호)

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가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가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형사사법 절차와 맞닿아 있고,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문제가 수반되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다수 부처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범죄피해자의 편의를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10) 법무부는 개정안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원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시스템이 없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함.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별 소상공인·자영업자 범죄피해 예방 물품 지원사업 현황(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

구분	지원 내용
서울	· 여성,1인 사업장 안심벨 '헬프미'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여성,1인 사업자 - (지원내용) 휴대용 안심벨(누르면 긴급신고 연결) 배포 · 여성,1인 사업장 안심경광등 설치 - (지원대상) 서울시 1인 상시 근무 점포 - (지원내용) 안심경광등, 비상벨, 스마트허브, 사인보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범죄 예방 캠페인 - (운영장소) 영등포역 광장, 백년시장
부산	· 여성 소상공인 대상 안전용품 전달 - (지원물품) 전자 호루라기 - (지원대상) 여성 소상공인
인천	· 2025년 여성안심드림(Dream) 사업 - (지원대상) 여성 1인가구 및 여성 1인 점포 - (지원내용)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또는 캡스홈 도어가드) 및 여성 1인 점포 안심비상벨 지원
광주	-
남구	· 스마트 주거·점포 안전지킴이 사업 - (지원대상) 안전 취약계층 1인가구 및 여성 1인 점포 - (지원내용) 현관문 개폐 상태를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 도어 센서, 실시간 움직임 감지와 원격 확인이 가능한 홈 CCTV 2종
경기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지원내용) 기존 시행 중인 사업에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항목 추가 지원
강원	-
춘천시	· 여성1인점포 안심점포세트 지원 - (지원대상) 춘천시 거주 및 사업장이 있는 여성1인점포 중 전·월세 점포 사업장

구분	지원 내용
	-(지원내용) 2개 세트 중 택1 *(A세트) 실내용CCTV, 휴대용비상벨, 호신용스프레이 *(B세트-wifi 미설치자) 휴대용비상벨, 창문잠금장치, 호신용스프레이, 송장지우개
충북	-
충주시	• 1인 여성 점포 휴대용 비상벨 지원사업 -(지원대상) 여성 1인 점포 (전·월세 계약자) -(지원내용) 휴대용 비상벨
전북	-
김제시	•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지원대상) 1인 점포 소상공인 -(지원내용) 안심벨 설치 및 안내문 부착
군산시	•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설치사업 -(지원대상) 여성 1인 점포 소상공인(전·월세 계약자) -(지원내용) CCTV 및 안심벨 설치
전남	-
나주시	•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관내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 -(지원내용) CCTV, 비상벨 설치 및 사용료(1년) 지원
경남	
사천시	• 「혼자서도 든든」 안심 물품 지원사업 -(지원대상)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 -(지원내용) 안심비상벨, 경광등수신기, 안내판
양산시	• 여성 1인 점주 안심벨 지원사업 -(지원대상) 여성 1인 사업자 (전·월세 계약자) -(지원내용) 안심벨 설치
제주	•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 -(지원대상) 도내 여성 1인 사업장 -(지원내용) 양방향모션 CCTV, 비상벨 설치 (12개월)

※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은 해당사항 없음